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가단517364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

담당변호사 사형환, 이해진, 전문우, 정창래

변 론 종 결 2022. 4. 21.
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4. 7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나.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. 7. 21. 접수 제33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은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15. 10. 30. 접수 제60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이 사건 청구원인

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,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.

가. 원고는 2014. 7. 17. 둘째 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증여하되, 피고 B의 부담으로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피고 C(원고의 아들), 소외 D(원고의 큰딸)에게 각 3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, ② 원고에게 충실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 부양의무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금 중 2,500,000원을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며, ③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으로 정하였고, 만일 피고 B이 위와 같은 부담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7. 17.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,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.

다. 그런데 피고 B은 그 후 D,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았고,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한 임대수익금 중 2,500,000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, 원고가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,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데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.

라. 한편 피고 B은 피고 C과 공모하여 피고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대신 피고 C이 피고 B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28.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,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.

마.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계약상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,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 C은 원인무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담부 증여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회기

별지